

의안번호	2217467
의 퇴 인	김성원 의원
회 답 일	2026. 4. 29.
추계번호	26A14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8조의3 신설 (전문가의 사실조사)	○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장치 등 물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132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사를 수행할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지정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에 출입하여 물건의 작동·계측 등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 또는 자료의 목록을 제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음(제1항) 1. 상대방 당사자가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2.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당사자가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을 것 4.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에 앞서 기일을 열어 상대방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제3항) ○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제1항의 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음(제5항)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이 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 전문가는 제4항에 따른 결정과 대상·범위 내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전문가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결과보고서 제출 후 즉시 조사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야 함(제6항) ○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하며, 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함(제13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재량규정
			의무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128조의5 신설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충족된 경우 당사자의 서면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당사자들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진술인, 범위, 방법 및 장소, 참석이 가능한 자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음(제1항)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3. 제128조의3제4항 각 호에 관한 신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지 아니할 것 ○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함(제3항) 1.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람 ○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술절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제6항)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대리인·통역인의 성명(후략)	재량규정 의무규정 의무규정
3	안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등 위반죄)	○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 제128조의3제6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및 제224조의3제6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28조의3 신설 (전문가의 사실조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28조의5 신설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3	안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등 위반죄)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①침해의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②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사자들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호 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③개정안의 내용에 수반하여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와 재정수입의 증가 요인이 모두 있으며, 이를 조문 및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재정지출의 증가는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 도입 및 이를 위한 영상녹화

를 하는 데 따른 공무원 인건비 및 진술녹취 장소 설치비, 전문가 사실조사 도입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

- 안 제128조의5에 따라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녹음 및 영상녹화가 가능한 진술녹취 장소와 해당 절차의 실무를 운영할 법원사무관 등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공무원 인건비와 함께 진술녹취 장소 설치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안 제128조의3에 따라 전문가를 지정하여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문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음¹⁾

○ 재정수입의 증가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수입으로 인해 발생

- 안 제229조의2는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벌금을 징수할 경우 재정수입(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순 재정부담은 재정지출의 증가액과 재정수입의 증가액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당사자에 의한 신문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에 따른 법원별 필요 인력 및 장비,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건수 및 액수 등을 알 수 없어 이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정지출 증가액의 경우 영상녹화시스템 등 장비 수요와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 침해소송을 관할하는 법원별²⁾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 증원 수요를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안 제128조의5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운영하면 해당 절차의

1) 안 제128조의3제13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변리사 등을 전문가로 지정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할 수 있겠으나, 공무원인 기술심리관 또는 조사관을 전문가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공무원 인건비이므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증거조사를 하는 전문가가 기술심리관 또는 조사관으로 지정될 때 발생할 공무원 인건비를 중심으로 살펴봄

2) 「법원조직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 침해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특허법원의 7개 법원에서 관할

「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권) ② 특허권등(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심판권) 특허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제1심사건
2.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법원공무원인 경우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 인건비가 소요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공증인 등) 수수료, 일당 및 여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법원이 영상녹화 등을 명할 사람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 비용추계를 위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절차상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법원공무원인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개정안에서 해당 법원공무원의 직급을 한정하지 않고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규정하여 해당 직무를 담당할 법원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진술녹취 장소 설치비용의 경우 기존 변론준비실의 활용 여부 및 기존 장비를 고려한 법원별 컴퓨터 및 영상녹화시설 등 장비 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128조의3**에 따라 법원이 사실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지정하는 경우 대법원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 전문가의 자격이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인 경우에만 공무원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법원이 지정할 전문가(기술심리관 및 조사관, 전문심리위원 등)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 비용추계를 위하여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으로 한정하더라도, 각 법원별로 기존 인력으로 수행 가능한 부분과 신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증원 필요한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의 수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정수입 증가액**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금전 제재를 받게 될 의무 위반행위의 건수와 1건당 벌금 부과액을 바탕으로 산출될 것이나,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므로 구체적인 재정수입 증가 규모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에 따라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대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 및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과,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데 따른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 참고로, 대법원은 전문가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비용을 8억 1,900만원으로 추계하였음(추계기간: 2026년 단년도)

* [참고자료] 개정안에 따른 예산 소요 검토(대법원)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주계세제총괄과	장설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654	shjang@assembly.go.kr

[참고자료] 개정안에 따른 예산 소요 검토(대법원)

(단위: 백만원)

항목	예산 소요	비고
기술심리관 또는 조사관 증원	180	$\cdot 90,195,545\text{원}^{1)} \times 2\text{명}^{2)} = 180,391,090\text{원}$ 1) 기술심리관 또는 조사관의 1인당 평균 연봉 2)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 접수 건수(연평균 410건), 1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40시간), 법원사무관 등의 연간 업무시간(1,840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정
법원사무관 등 증원	184	$\cdot 92,147,375\text{원}^{1)} \times 2\text{명}^{2)} = 184,294,750\text{원}$ 1) 법원사무관 또는 법원주사의 1인당 평균 연봉 2)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 접수 건수(연평균 410건), 1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30시간), 법원사무관 등의 연간 업무시간(1,840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정
진술녹취 장소 설치 비용	454	$\cdot 1\text{실당 설치비용}(26,928,000\text{원}^{1)} + 38,000,000\text{원}^{2)}) \times 7\text{개 법원}^{3)} = 454,496,000\text{원}$ 1) 진술녹취 장소 공사비(1실 기준): 26,928,000원 * m ² 당 816,000원 $\times 33\text{m}^2 = 26,928,000$ 2) 진술녹취 장소 자산취득 비용(1실 기준): 38,000,000원 * 책상, 의자, PC, 실물화상기, TV 등 비품: 19,000,000원 ** 녹음설비 구매·설치비: 16,000,000원 *** 카메라 구입: 3,000,000원 3)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특허법원
합계	819	—

주: 1. 2026년을 기준으로 1년간 소요될 예산을 추정

2.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 등 개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